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김 현 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32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4월 일

발 의 자: 김현희, 정정희, 박주선, 박성호  
송순효, 송영섭, 강선영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 (안 제1조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악취,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~제5조)
- 라.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을 규정함.(안 제6조)
- 마.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7조)
- 바.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악취방지법」 제3조

나. 협조부서: 녹색환경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4. 14. ~ 2020. 4. 19.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악취”란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- ② “생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정부, 서울특별시 및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민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

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·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
  2.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
  3.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준용)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